

# 의안회부(송부)내역(제353회)

□의안건수 : 총 18건( 조례안 6, 승인안 2, 동의안 10 )

의안번호	의안명	제출부서	제안일자	소관위원회
25	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	전 부 서	' 18. 8. 27	예결특위 공통
26	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(사용) 승인안	전 부 서	' 18. 8. 27	예결특위 공통
27	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여 성 가 족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28	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여 성 가 족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29	에코시티 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여 성 가 족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30	재능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여 성 가 족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31	아이월드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여 성 가 족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32	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	건 강 증 진 과	' 18. 8. 27	복지환경
33	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문 화 정 책 과	' 18. 8. 27	문화경제
34	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	문 화 정 책 과	' 18. 8. 27	문화경제
35	전북대학교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일자리창년정책과	' 18. 8. 27	문화경제
36	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시민안전담당관실	' 18. 8. 27	도시건설
37	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주 거 복 지 과	' 18. 8. 27	도시건설
38	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교 통 안 전 과	' 18. 8. 27	도시건설
39	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	자 전 거 정 책 과	' 18. 8. 27	도시건설
40	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양 영 환 의 원 외 7 인	' 18. 8. 27	복지환경
41	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양 영 환 의 원 외 7 인	' 18. 8. 27	복지환경
42	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	김 현 덕 의 원 외 11 인	' 18. 8. 27	행 정
	총 건 수 : 18건			
	예결특위(공통) : 2건			
	행 정 : 1건, 복지환경 : 8건			
	문화경제 : 3건, 도시건설 : 4건			

#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의안 번호	2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국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, 공기업특별회계, 기타특별 회계,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세입·세출결산

#### 1) 일 반 회 계

- 세입결산액 : 1,585,081,335,031원
- 세출결산액 : 1,255,416,623,291원
- 결산상잉여금 : 329,664,711,740원 에서
- 명시이월액 98,921,915,561원
- 사고이월액 25,239,545,760원
- 계속비이월액 100,946,075,380원
- 보조금집행잔액 7,450,711,030원을 차감한
- 순세계잉여금은 97,106,464,009원임.

#### 2) 공기업특별회계(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회계)

- 세입결산액 : 241,956,114,316원
- 세출결산액 : 162,371,640,979원
- 결산상잉여금 : 79,584,473,337원 에서

- 명시이월액            9,530,413,930원
- 사고이월액            13,015,448,345원
- 계속비이월액        47,418,055,770원을 차감한
- 순세계잉여금은      9,620,555,292원임.

### 3) 기타특별회계(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회계)

- 세입결산액 :    60,301,317,594원
- 세출결산액 :    41,994,111,889원
- 결산상잉여금 :    18,307,205,705원 에서
- 명시이월액        5,971,351,320원
- 사고이월액        1,307,394,010원
- 보조금집행잔액    105,610,351원을 차감한
- 순세계잉여금은    10,922,850,024원임.

### 4) 기금(사회보장기금 등 14종)

- 전년도말 조성액 : 58,677,048,120원 에서
- 당해연도 수입액 : 117,926,816,798원을 가산하고
- 당해연도 지출액 : 115,454,351,916원을 차감한
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,149,513,002원임

## 나. 재무제표

### 1) 재정상태표

- 총 자 산 :    10,230,158,652,334원 에서
- 총 부 채 :    9,917,121,158,258원을 차감한
- 순자산은        9,940,977,170,811원으로
- 전년대비        338,216,959,452원이 증가하였음.

## 2) 재정운영표

○ 총 수 익 : 1,560,371,541,904원 에서

○ 총 비 용 : 1,368,511,309,763원을 차감한

재정운영차액은 191,860,232,141원으로

전년대비 27,454,442,638원이 증가하였음.

## 다. 성과보고서

○ 결산대상 : 8개 회계(일반회계 1, 기타특별회계 7개)

(단위:천, 억원)

대상기관	성과목표						결산액		
	전략 목표	정책사업 목표		성과달성도			결산액	전년도 결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성과 지표	초과 달성	달성	미달성			
<b>68개 부서</b> 직속기관, 본청, 시의 회 사업소, 구청	<b>19</b>	<b>131</b>	<b>261</b>	<b>33</b>	<b>201</b>	<b>27</b>	<b>12,974</b>	<b>12,017</b>	<b>957</b>

#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(사용) 승인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국장

## 1. 제안이유

-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(사용)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예산액

- 일 반 회 계 : 890,979,000원
- 기타특별회계 : 5,835,960,000원
- 공기업특별회계 : 452,914,000원

### 나. 지출액

- 일 반 회 계 : 지출결정액 654,527,000원중 647,645,000원을 지출
- 기타특별회계 : 지출없음
- 공기업특별회계 : 지출없음

## 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2항(예비비)

#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,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(법인, 학교)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## 3. 법적근거
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-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
-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(위탁)
-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- 「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」

#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회복지법인·비영리법인·공익법인·대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제안사유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,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법적근거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(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)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의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」

#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전주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(위탁운영)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,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법적근거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나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다.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(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- 라.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마.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(위탁운영)

#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전주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(위탁운영)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3. 법적근거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나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다.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(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- 라.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마.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(위탁운영)
- 바.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-2041(2018.3.5.)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

#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전주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(위탁운영)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3. 법적근거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나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다.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(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- 라.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마.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(위탁운영)
- 바.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-2041(2018.3.5.)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

# 전주시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보 건 소 장

## 1. 폐지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,
-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였기에 「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제정 2006.4.5. 조례 제2598호) 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
- 나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여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관계 부서 협의 등

- 1) 부패영향평가 : 2018. 7. 18.
- 2) 규제심사 : 2018. 7. 24.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8. 7. 23.

마. 기타 필요사항

- 1) 입법예고(2018. 7. 30. ~ 8. 20. / 21일간) : 제출의견 없음
- 2) 폐지조례안 : 첨부

#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체육국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『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『전주영화종합촬영소』의 위탁기간이 2019. 1. 22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,
- " 전주영화종합촬영소" 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.

## 3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~제15조
  - 민간위탁 기준,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, 계약의 체결 등
- 「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관리 및 운영)
-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(사무의 위탁)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~제7조
  - 민간위탁 대상사무, 민간위탁 선정기준, 수탁기관 선정, 선정심사위원 등

#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체육국장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연번	사업명	사업내용	페이지 (사업계획서)
1	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사업	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의 2단지 사업인 예술교육센터 ‘꿈꾸는 예술터’ 조성	5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
  -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사업계획서(안) - 별첨

#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5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신성장산업본부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2018. 8월 중 완료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,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

## 3. 민간위탁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1조(위탁관리)

#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시민안전담당관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(재위탁)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제안사유

-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하여 24시간 ‘시민 안전 지킴이’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

## 3. 위탁근거

- 「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CCTV 관제센터 설치)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 4. 시설현황

시 설 명	위 치	시설 규모	관제인력
전주시 CCTV 관제센터	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(전주시청 8층)	면 적:280㎡ 관제CCTV:2,383대	18명 (3조 2교대)

#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생태도시국장

## 1. 개정이유

- 주거복지정책 관련 상위 법령인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「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,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,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·추가하고, 해피하우스사업 확대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정의함(안 제2조2호, 3호, 5호)
- 나.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·사회적경제 약자·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6호, 7호, 8호)
- 다.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8조 3항 및 안 제8조의2)
- 라. 주거기본법령에 맞게 현행 “주거복지지원센터” 를 “주거복지센터” 로 변경함(안 제4장 및 안 제18조, 제19조, 제20조)

#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시민교통본부장

## 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 법령(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등)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의 구성(안 제3조)
  - 위촉직 위원 성비 : 미규정 →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제한
- 위원의 임기 조정(안 제5조)
  - 위원의 임기 : 3년, 연임가능 → 2년, 연임 횟수 2회로 제한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 수정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 법령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나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여(2018. 6. 18.)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# 라. 협의사항

- 1) 부 패 영 향 평 가 : 2018. 6. 20. 회신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8. 6. 29. 회신

다. 규제심사 : 원안동의

바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필요없음

사. 기타 필요사항

1) 개정지시문 : 따로 붙임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3) 입법예고(2018. 6. 18 ~ 2018. 7. 8) : 의견없음

#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 27.

제 출 자 : 전 주 시 장

제안설명자 : 시민교통본부장

## 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『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』의 위탁기간이 2018. 12. 31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
-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과 기술·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제안사유

- 『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』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기술·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, 시민 및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위탁근거

- 「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23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「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(양영환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7.

발 의 자 : 양영환, 고미희, 송승용,  
이남숙, 이경신, 이윤자,  
허옥희, 박윤정 의원(8인)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## 1. 개정이유

-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,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(제6조제4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입법예고 : 필요없음(의원발의)
- 라. 기 타 : 개정지시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#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(양영환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7.

발 의 자 : 양영환, 고미희, 송승용,  
이남숙, 이경신, 이윤자,  
허옥희, 박윤정 의원(8인)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## 1. 개정이유

-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,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(제21조제1항제2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입법예고 : 필요없음(의원발의)
- 라. 기 타 : 개정지시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#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(김현덕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8. 08. 27.

발 의 자 : 김현덕, 강승원, 백영규,  
김호성, 이운자, 강동화,  
정섬길, 박윤정, 김원주,  
김동현, 서윤근, 한승진의원(12인)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## 1. 제정이유

-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하여 위령사업 등 지원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.
-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전주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(안 제4조)
- 라.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(안 제5조)
- 마.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바.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7조)